

체육진흥기금 규정

GNSAD

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 설치 규정

제정 2014. 08. 27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32조(기금 및 적립금)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 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.)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) 이 회계는 기탁금, 후원금,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과 그 이자를 기금으로 한다.

제3조 (지출) 이 회계는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경비를 세출로 하되 전입금과 예치한 기금의 이자를 그 한도로 한다. (재원으로 한다.)

제4조 (예비비)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제5조 (기금사용제한) 제2조에 수입되는 금액은 본 체육진흥기금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용 유용 또는 일시적인 대차 사용도 금한다.

제6조 (준용) 이 회계의 일반적인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일반회계 운영에 준한다.

제7조 (시행규정) 이 규정 시행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체육진흥기금 운영 규정

제정 2014. 08. 27

개정 2016. 01. 29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 설치규정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의 관리)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
1. 우수선수 또는 단체와 팀 양성을 위한 사업
2. 체육시설 보충을 위한 지원사업
3.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

제3조 (기금사용의 제한) 이 기금은 체육진흥사업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용 사용 또는 일시적 대치 사용도 금한다.

제4조 (기금의 사용범위) ①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6. 1. 29>

1.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 대비하여 선발된 선수의 강화훈련
2. 신인선수의 발굴과 그 양성
3. 우수지도자 양성 및 임용비
4. 우수선수의 생활보조
5. 우수한 단체와 팀 양성을 위한 지원

②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<개정 2016. 1. 29>

1. 체육시설
2. 체육용 기구 및 장비 지원
3. 개인 또는 단체와 팀에 대한 지원

③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한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.
<개정 2016. 1. 29>

1. 국내외 체육교류<개정 2016. 1. 29>
2. 기타 이사회에서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승인 한 사업

제5조 (지출액) 기금의 지출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결정하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.

제6조 (기금관리위원회)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역할을 장애인체육회 체전위원회에서 한다.

제7조 (사업계획 자문) ① 기금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은 매회년도 개시전 기금관리위원회 또는 필요할 시 도의회 소관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.

② 기금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.

제8조 (미비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2장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<개정 2016. 1. 29>